

부산지방법원 2021. 8. 19 선고 2020가단3314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다영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7. 8.

판 결 선 고 2021. 8. 1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,
가.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. 5. 7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오규희

별지